

세무와회계저널
제11권 제1호 2010년 3월 pp.237~266
한국세무학회

퇴직수당부담금의 기부금 한도초과에 대한 세무 회계 개선방안 연구*

김수성**

<요 약>

사학연금제도는 공적연금제도의 하나로서 지급하는 급여에는 퇴직연금·유족연금·장해연금의 연금급여와 일반 기업에서 퇴직시에 지급하는 퇴직금과 유사한 ‘퇴직수당’ 급여가 있다. 공무원연금의 퇴직수당 급여는 사용자인 국가가 전액 지급하고 있으나, 사학연금의 퇴직수당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사용자인 학교법인이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기금에서 매년 236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다. 이때 연금기금에서 지급하는 부담금을 ‘퇴직수당 공단 부담금’이라고 하는데, 매년 지급하는 236억원은 법정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하고 있어 기부금 한도 초과의 세무 조정 대상에 해당된다. 과거에는 법정기부금이 전액 손비로 인정되었으나, 최근 기부금의 손금 인정비율이 50%로 대폭 축소되어 매년 지급하는 236억원 중 50%는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있으며, 이월결손금이 존재할 경우에는 전액 손금불산입 되고 있다.

이처럼 사학연금기금은 학교법인이 지급해야할 퇴직금의 재원을 매년 236억원을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과세상으로는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즉, 퇴직수당은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퇴직수당 제도에 대한 본질적인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토대로 사학연금기금의 세무회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퇴직수당은 내부회계처리를 수정하여 연금회계를 준용하고자 한다. 퇴직수당제도는 연금급여의 일종으로 비과세대상인 고유목적사업 회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퇴직수당을 기금회계인 사학연금기금에서 지급하고 있어 세무조정을 하는 것이다. 향후 퇴직수당에 대한 회계를 연금회계로 수정하여 법인세의 세무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둘째, 퇴직수당부담금은 사립학교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임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기금에서 지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법인세법상 기부금 한도초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 퇴직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기부금 한도초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 본 연구는 사학연금기금에서 지급하는 퇴직수당부담금을 중심으로 회계와 세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한 것입니다. 본 연구의 완성을 위해 유익한 조언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 사학연금공단 감사실, 경기대학교 겸임교수, 세무학박사, mercury@ktpf.or.kr, 016-243-1683

이와 같은 문제는 사학연금기금에 있어서 시급한 당면과제로 조속히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과세상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사학연금기금이 법인세 과세로 인하여 연금제정 악화가 초래되지 않도록 이를 사전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사학연금기금에 과세상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세법 개정을 통하여 실질적인 연금제정 안정화에 기여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기금의 과세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있어서 기존의 연금제도 내에서 퇴직수당제도의 법적인 부담을 검토한 연구와는 달리 세제상의 검토를 하였다는데 실질적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공적연금, 퇴직수당, 퇴직수당부담금, 법정기부금, 기부금 한도초과, 사학연금기금, 연금회계

I. 서 론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크게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연금법에서는 다양한 부담금과 급여의 종류를 명기하고 있는데, 크게 국민연금은 노령연금과 장애·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연금제도와는 별도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특수직역연금은 법에서 정한 퇴직급여·유족급여·장해급여 이외에 ‘퇴직수당’이라고 하는 근로보상적 성격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퇴직금은 국민연금제도 가입자에게만 지급되며,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에게는 퇴직금 대신에 퇴직수당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민간기업에서 지급하는 퇴직금과 유사한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에게만 지급하는 퇴직수당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수직역연금제도와 국민연금제도의 태동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8년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노동법(근로기준법)과 국민연금법의 적용으로 퇴직금제도와 연금제도가 동시에 적용되었다. 반면,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및 1974년에 시작된 사학연금제도는 퇴직금제도와 유사한 퇴직수당제도가 적용되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사립학교교직원은 제도도입 전에는 일반기업 근로자들과 같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받다가 1974년 사학연금법이 제정된 이후, 퇴직연금과 일시금형태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그 이후 1991년 퇴직금 제도와 유사한 일시금(lump sum payments)형태의 퇴직수당제도가 도입되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두 종류의 급여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특수직역연금의 각 연금법상 퇴직수당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재원부담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제도의 가입자인 공무원과 군인연금제도의 가입자인 군인은 사용자의 의무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퇴직수당의 재원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¹⁾. 그

1) 공무원연금제도는 1995년까지 공무원연금기금에서 퇴직수당부담금을 부담하여 오다가 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하였다. 공무원의 사용자는 국가이므로 공무원의 퇴직금을 국가에서 지

그러나 사학연금제도의 가입자인 사학교직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사용자인 학교법인이 부담을 하고 있지 않다. 현재 사립학교교직원들의 신분상의 대우는 교육이라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볼 때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동일하지만, 사용자 측면에서 볼 때는 사립학교법인이 사학교직원의 사용자가 되므로 국가를 후견인으로 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군인과 동일한 신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용자가 국가가 아닌 학교법인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의 재원마련은 학교법인에서 나름대로 준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1991년 퇴직수당 제도 도입 당시부터 현재까지 사립학교 재정이 열악하여 퇴직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인이 퇴직수당 급여의 재원을 부담하기 보다는 국가가 이를 대신하여 재원의 대부분을 보조하고 있으며, 일부는 사학연금기금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1년부터 사학연금기금에서 매년 부담해오고 있는 퇴직수당부담금의 금액은 236억원이다. 이는 학교법인을 대신하여 사학연금기금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서 학교법인의 재정상태가 양호해 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나,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부담해 오고 있는 것이다.

현행 사학연금회계에는 연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되고 있다. 연금회계는 부담금의 징수와 급여의 지급을 주 업무로 하는 고유목적사업 회계에 해당하는 반면, 기금회계는 기금운용상의 이익에 대하여 세무조정과정을 거치는 수익사업회계에 해당된다. 사학연금기금에서 지급하는 퇴직수당부담금 236억원은 손익계산서에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하며, 현행 세법상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비용으로 손비처리 되고 있다. 퇴직수당부담금인 236억원은 본래 성격상 연금제도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과 유사한 급여로서 연금회계에 해당되지만, 그 재원부담을 사학연금기금에서 지급하고 있으므로 기금회계의 세무조정 과정상 기부금 한도초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연금회계는 비수익사업으로 비과세대상이지만, 기금회계는 수익사업회계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 현재 기금회계에서 지급되는 퇴직수당부담금 236억원은 세무조정 과정을 거쳐 기부금 한도초과 규정에 의해 236억원 전액이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최근, 사학연금기금은 지속적인 기금운용이익의 증가와 매년 손금불산입 되는 퇴직수당의 기부금 한도초과로 인하여 향후 법인세 납부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사학연금기금은 이와 같은 문제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에 직면해 있다.

퇴직수당제도는 특수직역연금에서 공통으로 지급하고 있는 급여의 일종이지만, 연금기금에서 퇴직수당 급여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기금은 사학연금기금에만 국한된 문제이며, 매년 법정기부금 한도초과로 인해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있는 기금도 사학연금기금에만 적용된다. 현재 사학연금기금은 법인세 신고시에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존재로 인하여 퇴직수당부담금 236억원에 대하여 전액 손금불산입 되고 있다. 과거 사학연금기금은 이와 같은 기부금 한도초과에 대한 문제를 간과하여 왔지만, 최근 기금운용이익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가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예측되

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국가에서 퇴직수당의 재원 전액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어 이에 대한 문제의 제기와 개선안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였다.

퇴직수당부담금 지급으로 인한 기부금 한도초과의 세제상 취급은 연금재정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도개선과 세제개선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학연금기금의 연금재정 안정화에 실제적으로 기여토록 하는 회계·세무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퇴직수당에 대한 세법상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학연금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아주 소수에 달하고 있다. 연금제도 개선에 관하여는 그래도 약간의 연구가 존재하지만 연금기금의 세제와 관련된 연구는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사학연금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는 김수성(2008)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²⁾. 사학연금과 관련한 그간의 연구를 살펴보면 연금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한 연구가 주를 차지하는데, 한국보험학회에서의 연구용역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가 있다³⁾. 또한, 사학연금제도의 퇴직수당과 관련한 법제적 연구로는 강강원(2005)의 연구가 있다. 강강원(2005)의 연구는 퇴직수당제도의 법률적 성격을 검토하여 퇴직수당제도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연구하였다⁴⁾. 이에 반하여 본 연구는 사학연금제도의 퇴직수당부담금을 중심으로 그 태동배경을 살펴보고, 퇴직수당제도의 세제적인 검토를 통해 회계·세무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공적연금회계의 양대 축인 연금회계와 기금회계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향후 사학연금기금은 사학연금법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수당의 지급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법인세 과세 문제가 연금재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에 법개정을 통하여 사학연금 기금의 재정안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행과 같이 각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퇴직수당부담금의 재원중 236억원을 사학연금기금이 대신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세제상으로는 전혀 혜택이 없으며 연금재정 악화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사학연금기금이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
- 2) 김수성. 2008. “공적연금기금 운용이익의 과세여부에 관한 법제적 연구 : 사학연금기금 운용이익 과세를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제25권 제2호. PP.93~138 참조.
 - 3) 사학연금공단은 한국보험학회에 1999년 「사학연금 책임준비금산정 및 재정안정화방안 연구」 용역과 2001년 「사학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고,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2006년에 「사학연금재정안정화 방안연구」 용역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용역은 재정효과 및 후생효과 분석(연도별, 교직원별 부담금과 급여금의 비교), 책임준비금 산정결과에 의한 기금부족분 진단 등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연금법 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1999년의 「공사연금과 사적연금의 균형적 발전방안(윤석명외, 1999)」과 2001년 「공적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연금제도 등 공적연금과 퇴직금 및 개인연금의 사적연금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대안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4) 강강원. 2005. 퇴직수당의 법률적 성격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제19권 제1호 : 65-109.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그런 이유로 퇴직수당부담금은 연금지급과 관련된 사항으로 퇴직수당의 지급은 연금회계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대상인 기금회계 상에서 볼 때, 법인세 세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236억원의 재원부담은 학교법인이 조속히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퇴직수당과 관련하여 세제적인 검토를 통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전개하고자 한다. 우선, 제Ⅱ장에서는 공적연금제도의 부담금과 급여현황 등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본 후 회계와 세제현황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Ⅲ장에서는 퇴직수당제도와 관련한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퇴직수당 부담금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제Ⅳ장에서는 위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회계와 세제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제Ⅴ장에서는 연구의 결론을 맺고자 한다.

Ⅱ. 공적연금제도의 일반적 현황과 회계·세무 고찰

1. 공적연금제도의 수입과 지출

가. 연금회계의 부담금 수입과 급여 지급

우리나라의 연금과 관련하여서는 크게 두개의 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연금회계와 누적된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회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연금제도와 관련된 회계는 부담금 수입과 급여의 지급으로 이루어진다. 연금회계의 손익계산서 대변에 기재되는 수입항목으로는 각종 부담금 수입을 들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국가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의 부담금과 전입금 등이 있다. 반면, 연금회계의 손익계산서 차변에 기재되는 지출항목으로는 각종 급여를 들 수 있다⁵⁾.

우리나라 공적연금 급여에는 장기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급여와 단기보험사고에 대비하는 단기급여가 있다. 사학연금 급여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직원이 재직중에 직무로 질병·부상을 당하거나, 화재·홍수 등으로 주택에 재해를 입었을 때 또는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에는 단기급여를 지급하며, 교직원이 퇴직·폐직 및 사망으로 급여의 사유가 퇴직 후에 발생한 때에는 장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단기급여로는 직무상요양비, 재해보조금, 사망조위금 등이 있으며, 장기급여는 퇴직급여·유족급여·장해급여가 있고, 별도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퇴직수당 급여가 있다.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은 연금제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연금으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된 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연금과 일시금, 또는 공제일시금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반면, 퇴직수당은 민간기업의 퇴직금제도

5)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는 공무원연금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 4종과 제42조의 장기급여 14종으로서, 총 18종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와 유사한 급여로 근로보상적 성격의 급여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사학연금제도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사학연금관리공단이 1974년에 설립되면서 시행되기 시작했다. 4대 공적연금의 하나로 태동한 사학연금제도는 사립학교교직원의 복지실현을 통해 사학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가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금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학연금의 재정수입은 연금회계 측면에서 징수하는 각종 부담금 수입과 기금회계 상에서 기금운용을 통하여 얻는 기금운용 수입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수입은 연금급여 및 퇴직수당, 재해부조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원천이 된다.

사학연금제도는 사회보험의 하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담금은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가 납부하는 보험료 성격의 납부금에 해당된다. 1975년 시행 당시 급여 기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개인부담금·국가부담금·법인부담금과 그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하였다⁶⁾.

각종 부담금의 부담률은 연금법의 개정에 따라 여러 차례 변경되었으며, 가장 최근에 법개정되어 2001년도부터 시행된 부담률은 보수월액 대비 15%에서 17%로 상향조정 되었다⁷⁾. 사학연금제도의 연금회계의 부담금 수입은 교원의 경우에는 개인부담금(8.5%)과 법인부담금(5.0%) 및 국가에 의한 부담금(3.5%)이 있는 반면, 교직원의 경우에는 개인부담금(8.5%)과 법인부담금(8.5%)이 있다. 반면, 재정지출은 크게 퇴직후 연금 등으로 지급되는 급여지급과 기금운용 관리

6) 사학연금법 제43조. 사학연금관리공단, 2006,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조문별 해설, 사학연금실무서 참조

7) 1974년 제도 도입 당시 개인부담금은 교원이 그가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이를 부담하고 그 금액은 봉급월액의 1,000분의 55로 하였다. 반면, 국가부담금은 교원이 납부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의 55분의 20으로,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고 그 금액은 당해 학교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의 55분의 35로 하였다. 1978년에 사무직원이 법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사무직원과 학교경영기관의 부담금은 당시 교원의 부담금 납부수준과 같이 봉급월액의 1,000분의 55로 하였다. 다만 교원이 법적용을 받을 때와는 달리 사무직원이 법적용을 받을 때에는 국가부담금은 없는 점이 차이가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시행된 지 20년만인 1996년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비용을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전체적으로는 보수월액 대비 2%(중전 보수월액 대비 110/1,000→130/1,000)인상 되고, 그 중 교직원개인이 보수월액 대비 55/1,000에서 65/1,000로 1%P(% point), 사용자(학교법인, 국가)가 55/1,000에서 65/1,000로 1%P 각각 인상되었다. 다시 1999년에는 비용부담률을 중전보다 총 2%인상 조정하고, 부담주체별로 교직원이 1%(65/1000→75/1000), 사용자가 1%씩 각각 추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2001년에 개인부담금의 액은 보수월액의 1,000분의 85로, 국가부담금의 액은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85분의 35로, 법인부담금의 액은 당해 학교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85분의 50으로 인상하였다. 현행 사학연금제도의 부담금의 종류와 부담률은 다음과 같다.

비 등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급여종류별 현황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은 지급되는 급여의 명칭만 다를 뿐 급여의 모든 조건들은 동일하다⁸⁾. 사학연금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사학연금제도의 재정수입의 재원은 무엇보다도 부담금을 들 수 있는데 그 종류는 다양하다. 손익계산서에 기재되는 수입항목으로는 각종 부담금 수입과 전입금, 이입충당금이 해당되며, 부담금 수입은 통상적으로 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국가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등의 부담금을 말한다.⁹⁾

사학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로는 <표 1>의 공적연금 급여종류별 현황에서 본 바와 같이 단기급여와 장기급여가 있다. 단기급여로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으로서, 직무상요양비와 직무상요양일시금, 재해보조금 및 사망조위금이 있다. 반면, 장기급여의 종류와 성격 및 과세여부에 관한 사항은 후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특수직역연금제도 가입자들은 퇴직시에 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연금의 선택이 가능한 반면, 국민연금은 일시금 선택은 불가능하고 오로지 연금만 선택할 수 있다. 퇴직금과 퇴직수당은 일시금으로 수령한다.

부담금의 종류	부담자	부 담 료		비 고
		교 원	사무직원	
개 인 부 담 금	교직원	보수월액의 85/1,000	보수월액의 85/1,000	월 납
법 인 부 담 금	학교(법인)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50/85	개인부담금과 동일	월 납
국 가 부 담 금	국 가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35/85	—	분기납
퇴직수당 부담금	국가부담금	국 가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분기납
	공단부담금	공 단	92년도 퇴직수당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236억원)	연 납

- 8) 연금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인 부담금에 대한 용어가 다음과 같이 각 법률별로 각각 상이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당해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기술하고자 한다.

구 분	가 입 자	사용자(고용주)	국 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국가부담금
공무원연금법	기 여 금	연금부담금·보전금	
군인연금법	기 여 금	연금부담금·보전금	
국민연금법	보 험 료	기여금	—

- 9) 부담금 수입으로는 개인부담금으로 당월 개인부담금(사학연금법 제44조), 군소급부담금(제48조의3), 소급통산부담금(부칙 제2조), 합산반납금(제32조)과 법인부담금(제47조), 국가부담금(제46조), 재해보상부담금(제48조의 2), 퇴직수당부담금(제47조 2항, 동법 시행령 제69조의3)으로 구성된다.

〈표 1〉 현행 공적연금별 급여종류 상호비교

구분	급여종류		사학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
단기 급여	직 무 상 요 양 비		○	○(공무상요양비)	—	○(공무상요양비)
	직 무 상 요 양 일 시 금		○	○(공무상요양일시금)	—	—
	재 해 부 조 금		○	○	—	○
	사 망 조 위 금		○	○	—	○
장기 급여	퇴직급여	퇴 직 일 시 금	○	○	○(반환일시금)	○(퇴역일시금)
		퇴 직 연 금 일 시 금	○	○	—	○(퇴역연금일시금)
		조 기 퇴 직 연 금	○	○	○	—
		퇴 직 연 금	○	○	○(노령연금)	○(퇴역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	—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유족급여	유 족 일 시 금	○	○	—	○
		유 족 연 금 일 시 금	○	○	—	○
		유 족 연 금 부 가 금	○	○	—	○
		유 족 연 금	○	○	○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	—	○
	장해급여	장 해 연 금	○	○	○(장애연금)	○(상이연금)
		장 해 보 상 금	○	○	—	—
	퇴 직 수 당		○	○	퇴직금 수령	○

(주) 각 공적연금제도의 연금법령(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 군인연금법, 국민연금법)을 참조함

사학연금제도에서 민간의 기업에서 지급하는 퇴직금과 유사한 급여는 ‘퇴직수당’이다. 이 급여는 사학교직원의 퇴직이나 사망시에 지급되며, 1단계의 연금보장 급여를 보완하는 2단계의 보장제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급되는 근로보상적 급여에 해당된다¹⁰⁾. 퇴직자들에게 지급하는 장기급여의 종류에는 퇴직일시금을 포함하여 14종이 있으며, 유족급여·장해급여·재해보상 부조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실제 과세대상 퇴직소득은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¹¹⁾·퇴직일시금·퇴직수당 등 4종에 한한다.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등에 대하여는 기존의 퇴직소득과세와 동일하게 과세한다.

10) 자세한 사항은 사학연금공단(2007), 「연금실무 길라잡이」 참조.

11)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은 연금과 일시금으로 각각 수급 가능한 금액을 나누어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33년을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20년 초과분에 대한 13년에 대하여는 일시금을 선택하고, 20년에 해당하는 부분은 연금으로 선택하는 급여제도이다. 이중 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고, 20년에 대한 연금액은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공적연금제도에 의하여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으로 공적연금에 의한 연금소득의 종류에는 퇴직연금을 포함하여 3종이 있으나, 유족·장해연금은 비과세이므로 실제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퇴직연금만 해당된다. 공적연금은 일시금과 연금에 수령방법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 세부담에 차이가 있게 된다. 퇴직연금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퇴직소득공제 및 연분연승법에 의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며 분류과세 된다. 반면 퇴직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연금소득공제에 의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며 종합소득으로 과세된다.

연금제도의 장기급여 종류 및 소득과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기급여로는 퇴직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가 있으며, 별도로 본 연구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퇴직수당제도가 있다. 퇴직급여는 소득보장급여로서 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퇴직연금일시금·퇴직일시금이 있으며, 퇴직연금은 연금소득과세가 되고 있으며,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은 연금소득과세와 퇴직소득과세가 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장해급여는 재해보상급여로서 장해연금과 장해보상금이 있으며 비과세하고 있다. 반면, 유족급여는 소득보장급여와 재해보상급여로 분류할 수 있는데, 소득보장급여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이 있고, 재해보상급여는 유족보상금과 유족일시금이 있으며 비과세된다. 퇴직수당은 근로보상급여로서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

나. 사학연금제도의 부담금과 급여의 국가 지원

사학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국가에서는 매년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사학연금제도를 민간기관인 연금관리공단에 운용을 위탁하였지만, 실제로 연금제도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매년 국가는 연금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는 교원이 부담하고 있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35/85를 국가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사학교직원의 퇴직시에 학교법인을 대신하여 퇴직수당 급여의 재원중 공단부담금 236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년 부담하고 있는 등 사학연금제도에 대하여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¹²⁾.

- 12) 연금제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연금제도가 본연의 목적대로 수행되기 위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예산의 일부를 사학연금의 지원에 사용하고 있다. 국가는 교원이 부담하는 부담금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퇴직수당부담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사학연금에 대한 국가지원의 종류와 법조문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국가연금부담금	국가퇴직수당부담금	연금기금사용이자	국고학자금위탁
조 문	법46조, 시68의2	법46·47조, 시69의3	법60의3, 시96③	법60의3, 시96②
부담률	개인부담금의35/85	총소요액-236억원('92)	학자금 사용자	민간위탁비용 포함

(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참조함.

2. 공적연금 회계와 세제 현황

가. 공적연금회계의 구성

우리나라 연금관리공단의 공적연금회계는 기본적으로 연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구분경리하고 있다. 연금회계는 연금제도 자체와 관련한 고유목적사업회계로 법인세 비과세대상 회계인 반면, 기금회계는 적립된 기금을 운용하여 영리의 수익사업을 하는 법인세 과세대상회계에 속한다. 즉, 연금회계는 가입자 본인과 법인 및 정부의 부담금 징수와 연금 및 퇴직일시금 등의 지급을 처리하는 고유목적사업의 회계인 반면, 기금회계는 연금회계에서 적립된 기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운용이익의 재원을 다시 연금회계에 조달하는 수익사업의 회계를 말한다.

이 두 회계는 공적연금회계의 큰 축으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 회계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합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뒤에서 서술하고 있는 <그림 1>의 퇴직수당의 재원 흐름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금회계에서의 잉여금은 기금회계에 전입되며, 부담금 수입보다 급여지출이 클 때에 부족분은 기금회계로부터 전입하여 충당하기 때문에 두 회계는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행 공적연금회계를 살펴볼 때는 연금회계와 기금회계를 동시에 살펴봐야 한다. 각 연금관리공단은 공단과 별도로 각 연금기금을 두고 있다. 연금관리공단은 연금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부담금을 징수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연금회계의 대상인 반면, 연금기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징수한 부담금의 적립기금을 운용하는 기금회계대상에 속한다.

나. 기금회계의 법인세 과세

연금회계는 고유목적사업(연금급여 지급 및 퇴직수당 급여 지급, 재해보상 급여 지급)을 위한 것으로 연금관리공단 본연의 업무에 대한 회계처리를 말하며, 기금회계는 수익사업(자금운용사업, 대여사업, 부동산 임대사업 등)과 관련된 것으로 연금기금을 운용하여 기금을 증식하는 사업의 회계처리를 말한다. 이 두 회계 중에서 기금회계는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매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퇴직수당제도는 연금회계에 속하는 급여의 일종이지만, 사학연금기금에서 지급되고 있으므로 기금회계 측면에서 볼 때 법정 기부금으로 손비 처리되고 있다. 즉, 사학연금기금에서 매년 236억원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금회계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사학연금제도에서는 퇴직수당의 급여지급을 학교법인이 지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재단의 재원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사학연금기금에서 대신하여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금액은 사학연금기금의 세무신고시 기부금 한도초과로 인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표 4>의 과거 8개년 동안의 사학연금기금의 각사업연

도소득금액을 보면 알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퇴직수당제도의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법인세 납부금액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III. 퇴직수당제도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1. 특수직역연금의 퇴직수당제도 주요 내용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제도는 서구의 소득보장제도와는 달리 공적연금제도와 같은 사회보장 관련법보다는 노동관련 법인 노동법이 먼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었다. 즉, 퇴직 등 근로상실에 따른 소득대책으로 사회보험형식의 급여제도보다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가 먼저 시행된 것이다¹³⁾.

1953년에 일반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금제도가 시행되고 난 후, 1960년이 되어야 비로소 일반근로자와는 달리 공무원과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교육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에 가입함에 따라 이때부터 국공립교직원과 사립학교교직원간에 퇴직에 따른 소득보장제도에서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국공립교원은 당시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을 받게 되었으나,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종전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에 의한 소득보장을 받게 되었다. 그러다가 1974년에서야 사학연금제도가 태동되어 이때부터 국공립교직원과 사립학교교직원은 연금법상의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제정 공포된 교육법에 사립학교에 관한 규정을 두었는 바, 그 주된 내용은 사립학교의 공공성에 대해 규정하여 국·공·사립학교 사이에 차별이 없을 것과 교육에 관한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국·공립학교와 같이 동등하게 처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퇴직소득보장 측면에서는 국공립교원과 사립학교교직원간에 큰 차이가 있었고, 특히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학교재정이 열악한 상황이었다. 그런 가운데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학교평균화 정책으로 국공립교원과 사립학교 교원 간에 인사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었고, 동일한 교직업무를 하는 교원들 간에 처우면에서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시대적 배경으로 1975년에 들어 와서 사학교직원에 대해서도 국·공립교직원과 같은 수준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를 도입·실시하게 되었다¹⁴⁾.

13) 퇴직금은 1961년(1961.12.4 법률 제791호)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서 근속연수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적어도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되었다. 퇴직금은 전적으로 기업의 재정부담에 의하여 운영이 되는 전형적인 사적복지제도이면서 법정제도로 존재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공적복지제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최근 연봉제의 실시로 퇴직금제도는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가. 퇴직수당제도의 도입 배경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제도의 도입배경은 민간근로자의 퇴직금 성격의 급여제도가 없다는 것이 그 직접적인 이유이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아 보지 못하고 1960년부터 연금제도를 적용받게 되었다. 따라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민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과 국민연금이라는 두 종류의 소득보장책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런 연유로 민간근로자의 퇴직금과 같은 성격의 퇴직소득을 위해 공무원연금법에 퇴직수당이라는 급여를 새로이 신설한 것이다.

그러나 사립학교교직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경우와 다소 다르다. 사학교직원은 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는 학교경영기관별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제도를 실시하여 오다가 1975년도에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제정·시행한 이후부터 연금법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새로운 노후소득 및 생활보장책으로 전환하였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제도는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그 금액은 재직기간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에 특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퇴직수당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정부가 지급하는 금액은 1990년도의 퇴직급여가산금 및 유족연금가산금의 지급에 소요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¹⁴⁾. 그러나 공무원연금기금은 공무원연금의 재정악화를 고려하여 1996년부터 공무원연금기금의 부담을 폐지하고, 전액 국가에서 부담토록 개정하였다.

그러나 사학연금의 경우에는 퇴직금과 유사한 퇴직수당의 지급은 사용자인 학교법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퇴직수당은 퇴직금제도의 일종으로서 원래 사용자로서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몫이지만, 현재 법인의 재정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시적으로 사학법인의 재정여력이 생길 때까지 사학연금기금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즉, 퇴직수당 재원 중에서 236억원은 사학연금기금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은 국가에서 부담토록 하였다. 이러한 퇴직수당은 정부가 대납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바, 사용자로서 학교법인은 퇴직금에 대해 실제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그다지 크지 않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퇴직수당제도 현황은 <표 2>와 같다.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직수당제도는 특수직역연금에만 존재하고, 퇴직금 제도는 국민연금에만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하에서는 사학연금제도의 퇴직수당을 중심으로 언급하되, 공무원연금의 연혁과정을 참고로 살펴보고자 한다.

14) 사학연금관리공단. 1991. “한국의 교육발전과 사학”에서 참조함.

15)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2항.

〈표 2〉 공적연금의 퇴직수당제도 현황

구 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퇴직수당 제도	○	○	○	×
퇴직금 제도	×	×	×	○
공단(기금) 부담액	0원	236억원	0원	0원
국가 부담액	전액	(퇴직수당금액-236억원)	전액	0원 (전액 사업자 부담)

(주) 각 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함.

나. 퇴직수당제도의 도입 이유

퇴직수당제도의 도입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무원은 민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명목의 퇴직소득제도가 없기 때문에 민간근로자와 비교할 때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퇴직수당제도이다. 즉, 민간근로자의 경우에는 1988년 국민연금법이 시행되면서 퇴직할 때 퇴직금과 국민연금 두 종류의 소득이 보장되는 체계로 바뀌었다. 반면, 특수직역연금의 종사자는 기존의 연금법상 퇴직급여에 의한 소득보장만이 존속하였다. 결과적으로 양 직종종사자의 소득보장에 있어서 제도적인 불평등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어 퇴직수당제도가 태동된 것이다.

공무원연금제도의 퇴직수당은 민간근로자의 퇴직금처럼 퇴직시 또는 퇴직 후 경제적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받는 일시금 성격의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현행 공적연금 제도 가입자 중에서 퇴직금의 지급은 국민연금에만 해당되고, 특수직역연금에는 퇴직금 제도가 없다. 그래서 국가는 1991년 10월 1일 공무원에 대해서 퇴직 후 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퇴직급여 외에 정부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퇴직수당제도를 신설하여 퇴직금과 국민연금 두 종류의 퇴직소득을 받고 있는 민간근로자와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다.¹⁶⁾

다. 퇴직수당의 재원부담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는 기여제의 비용부담방식을 채택하여 연금수급자인 공무원과 사용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사학연금제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연금수급자인 사학교직원과 사용자인 학교법인, 또는 국가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즉, 공무원이 매월 보수액의 8.5%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액의 8.5%를 부담금으로 납부함으로써 균등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연금은 사용자 책임급여인 퇴직수당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사학연금의 경우에는 퇴직수당에 소요되는 재원은 사용자인 학교법

16) 1991. 1.14 법률 4334호 법개정 제안 이유, 강강원(2005)의 pp.77~78 참조.

인이 부담해야 하나, 재정이 열악하여 236억원은 사학연금기금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잔액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써 학교법인은 실질적으로 퇴직수당의 부담금에 대하여 전혀 기여하지 못한 채, 퇴직수당급여만 수령해가고 있어 비기여제도의 연금제도가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⁷⁾.

(1) 퇴직수당 제도의 연혁

퇴직수당제도는 재직기간 5년 이상인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기존의 퇴직(유족)급여가산금 제도를 대신하여, 재직기간 1년 이상인 교직원들에게 보수월액의 10%에서부터 60%의 금액을 지급하는 민간기업의 퇴직금과 같은 성격의 급여이다. 사학연금제도의 퇴직수당 급여제도는 민간기업의 퇴직금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교직원에게 퇴직(연금)일시금의 20%~30% 상당액을 가산 지급하는 가산금제도를 대신하여 1991년 10월 1일 신설된 것이다. 퇴직수당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부담금은 법인부담금·국가부담금·공단부담금으로 하기로 하였는데 퇴직수당의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국가와 사학연금기금에서 부담하고 있다.

퇴직수당급여의 지급 금액은 당해 연도에 1년 이상 재직한 교직원이 퇴직 또는 사망시 일시금으로 연금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그 급여산식은 보수월액×재직연수×재직연수별 지급률을 합한 금액이다¹⁸⁾. 이러한 금액중 공단이 236억원을 부담하고¹⁹⁾ 나머지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공단은 사학연금제도의 위탁관리자로서 존재할 뿐 사학교직원의 고용주나 사학연금제도의 운영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수당 공단부담분에 대한 부담은 고용주인 사학법인이나 국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17) 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방식에는 기여제(contributory system)와 비기여제(non-contributory system)가 있다. 기여제는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와 연금수급자에게 공동으로 부담시키는 방식을 말하고, 비기여제는 연금수급자에게는 비용부담을 시키지 않고 사용자가 소요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사회부조가 아닌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모든 연금제도는 기여제를 채택하고 있다.

18)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
재직기간이 1년이상 5년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재직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35
재직기간이 10년이상 15년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45
재직기간이 15년이상 20년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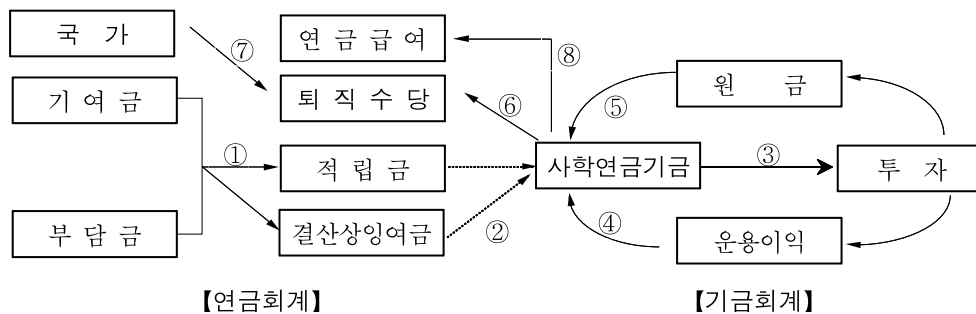
19) 퇴직수당 공단부담금(236억원)의 산출 근거로는 다음과 같다. 퇴직수당 공단부담금 제도가 1991년 10월 1일 신설되었을 당시 전년도인 1990년의 퇴직급여가산금과 유족급여가산금 지급액의 합계액을 공단부담금으로 하였다. 즉,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은 22,136,909천원 + 1,493,446천원 = 23,630,355천원이다.

(2) 퇴직수당 재원의 흐름도

퇴직수당의 지급은 장기급여의 하나로서 비과세대상인 연금회계에 포함되나, 퇴직수당부담금의 재원 부담과 관련하여 비용 처리하는 것은 기금운용과 관련된 것으로 수익사업회계로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연금제도의 대부분은 부담금의 각출과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연금하고 있으며, 이는 연금회계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퇴직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도 퇴직수당은 급여의 일종으로 연금회계의 대상에 해당되나, 사학연금기금에서 매년 236억원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비처리에 대하여 과세대상인 수익사업회계에서는 세무조정과정을 거쳐 기부금 한도초과로 인한 손금불산입이 되어 전액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사학연금기금의 퇴직수당의 재원 흐름과정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여금과 부담금을 수입원으로 하여 급여를 지급하고(①) 난 후, 적립된 금액과 연금회계상의 결산상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연금기금에 100% 편입한다(②). 이렇게 편입된 기금은 각종 다양한 사업(기금운용사업, 대여사업, 부동산 임대사업 등)에 투자하여 사학연금기금을 운용하여(③) 원금과 운용이익을 사학연금기금에 편입하고(④,⑤) 필요시 퇴직수당 급여의 재원으로 사학연금기금에서 지급한다(⑥). 이때 퇴직수당의 금액 중에서 236억원은 연금기금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부담한다(⑦). 반면, 연금기금은 연금급여의 지급이 필요할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연금회계에 충당한다(⑧). 각종 부담금의 징수와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연금회계의 대상으로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있지 않지만, ⑥과 같이 사학연금기금에서 퇴직수당에 지급하는 236억원의 지급은 기금회계 측면에서 볼 때 과세대상에 속하며, 세무조정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림 1> 퇴직수당 재원의 흐름도



출처 : 김수성(2008)의 논문 130면을 수정한 것임.

2. 퇴직수당 재원 부담 관련 문제점

가. 비용부담자의 부적정

사학연금법상 퇴직수당제도는 퇴직금 제도의 일종으로서 학교경영기관이 그 재원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가와 사학연금기금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금 성격으로 볼 때 이는 비용부담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퇴직수당지급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하여 입법당시에는 학교경영기관 부담을 원칙으로 하여 제도가 태동되었지만, 실제부담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학교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학교경영기관은 전혀 부담하지 않고, 국가와 사학연금기금의 부담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어 비용부담 측면에서 볼 때 불합리하다. 이는 재원부담의 비용부담자의 부적정성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퇴직급여 비용부담에 있어서 정부예산부처와 국회에서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논란이 되어 왔다. 즉, 퇴직수당에 대한 국가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것과 사학연금기금의 재정에서 퇴직수당부담금을 지급함으로써 연금재정 악화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²⁰⁾. 이처럼 현행 퇴직수당제도는 사용자인 학교법인이 퇴직수당재원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담하지 않는 다는 것이 비용부담 측면에서 불합리 하다고 할 수 있다.

나. 퇴직수당의 급여부담으로 인한 연금기금의 재정 악화

(1) 연금기금 재정 악화

1975년 사학연금제도 시행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학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제도를 준용하고 있다. 국공립교원과 사학교원간의 연금제도상의 수혜에 있어서 평등해야 한다는 논리 때문에 이에 편승한 사학연금제도의 경우에도 비용부담 없는 퇴직수당제도로 인해「저부담·고급여」의 수급구조로 변경됨에 따라 재정악화의 원인이 되었다.

한편, 사학교직원은 민간근로자들과의 노후소득제도가 평등해야 한다는 논리 때문에 민간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 및 사회제도와 비교해서 미흡한 부분을 사학연금제도에 반영함으로써 연금재정이 악화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퇴직수당제도라 할 수 있다. 사학연금법상 퇴직수당제도를 둔 배경은 기술한 바와 같이 민간근로자들은 국민연금 이외에 고용주로부터 받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성격의 급여가 있지만,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퇴직금 제도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공적연금제도간에 양 직종 종사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1년에 도입한 것이다.

20) 국가부담의 과중이라고 하는 주장은 원래 법적으로 부담의무자가 사립학교경영기관이므로 학교경영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고, 연금기금에서 퇴직수당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해야 한다는 주장은 본래대로 학교기관에서 부담해야 하나 학교교육 사업의 주체는 광의로 볼 때는 국가이므로 열악한 학교재정의 현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2) 연금기금 부담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

현재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수당급여 재원부담에서 만큼은 준용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퇴직수당부담금을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동시에 부담하고 있었으나, 1996년부터는 기금이 부담하는 대신 전액 국가에서 부담토록 하였다. 그러나 사학연금기금에서는 매년 236억원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회비용의 발생으로 인해 연금재정의 악화가 예상된다. 퇴직수당재원을 사학연금기금의 부담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학연금기금에서 지급한 금액을 그 기간 동안의 기금운용수익률로 기회비용을 감안하면, 4,180억원으로서 2007년말 연금기금액(9조 3,766억원) 대비 4.45%로 연금재정에 악화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였다.

<표 3> 퇴직수당부담금의 연금기금 지급에 따른 기금 손실액

(단위 : 백만원, %)

연 도	퇴직수당 건수	국가부담액 (A) ²¹⁾	기금부담액 (B)	퇴직수당총액 (C=A+B)	운용수익률 ²²⁾	기회비용 (누 계)
1991	741	0	1,880	1,880	11.5	2,096
1992	8,634	18,996	23,630	42,626	13.9	29,011
1993	8,527	28,343	23,630	51,973	14.8	56,138
1994	10,707	56,435	23,630	80,065	15.9	83,525
1995	9,561	50,791	23,630	74,421	11.5	109,873
1996	10,040	55,314	23,630	78,944	11.3	136,173
1997	10,651	69,887	23,630	93,517	11.7	162,568
1998	12,503	107,363	23,630	130,993	8.1	188,112
1999	18,420	261,577	23,630	285,207	17.0	215,759
2000	17,702	156,610	23,630	180,240	0.7	239,554
2001	15,529	78,973	23,630	102,603	8.9	265,287
2002	16,616	101,961	23,630	125,591	6.4	290,429
2003	17,191	129,440	23,630	153,070	7.4	315,808
2004	17,134	155,767	23,630	179,397	6.5	340,974
2005	17,967	161,809	23,630	185,439	9.4	366,825
2006	18,813	238,833	23,630	262,463	5.6	391,779
2007	21,440	188,137	23,630	211,767	10.9	417,984
계	232,176	1,860,236	379,960	2,240,196	—	—

(주) 사학연금공단 내부자료를 참조함.

21) 1992년도 국가부담액 189억원중 121억원은 학교법인 부담액이었으나, 그 이후에는 부담하지 아니하였음

22) 투자수익률은 사학연금기금의 기금운용수익률을 표기한 것임

위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1년부터 2007년 말까지 퇴직수당 지급 총건수는 232,176건이고, 총 지급액은 2조 2,401억원이다. 이중 사학연금기금의 부담액은 약 3,800억원 이었다. 연간 총 퇴직수당 지급액 중 사학연금기금에서 매년 236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기간 동안 사학연금기금으로 총 3,800억원을 지급하였으며, 만약 퇴직수당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금기금을 운용하였을 경우 기회비용을 감안한다면 약 4,180억원의 연금기금이 추가로 적립될 것으로 추정된다.

3. 사학연금기금의 퇴직수당부담금 관련 법인세제 검토

가. 기부금 한도 초과 손금불산입

사학연금기금에서 매년 236억원을 퇴직수당부담금으로 부담하는 바, 이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사용자인 학교법인이나 경영기관이 재원을 부담해야 할 성격의 재원을 공단의 연금기금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1991년부터 매년 지급하는 236억원에 대하여 기부금 한도초과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인세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1) 퇴직수당 기부금 관련 예규

퇴직수당과 관련하여 기부금으로 처리되는 관련 예규는 크게 공무원연금의 퇴직수당 지급과 관련한 예규와 사학연금에 적용되는 퇴직수당의 기부금 관련 예규가 있다. 우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부담하는 퇴직수당 관련 예규로는 공무원연금기금이 퇴직수당 부담금을 지출할 경우는 법정기부금으로 손비처리 되었지만²³⁾, 1995년 12월 29일에 공단 부담 규정이 삭제되어 그 이후부터는 공무원의 사용자인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사학연금기금에서 지급하는 퇴직수당 공단부담금 236억원은 기존의 공무원연금의 경우와 동일하게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는 면에 있어서는 동일하나²⁴⁾,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학연금기금에서 부담토록 하는

23) 【요약】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을 지출할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법인46012-3480(1994.12.20)>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퇴직수당비용을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의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당해 공단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중 일부를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2항의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공무원 퇴직수당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2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부담하는 퇴직수당부담금은 기부금임<법인46012-4425, 1995.12.04>

【요약】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중 일부를 퇴직수당부담금으로 지출한 경우 손금산입되는 기부금에 해당됨.

【질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부담하는 퇴직수당부담금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

측면이 공무원연금제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2)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기부금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한다. 또한,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와 거래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과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²⁵⁾. 조세법상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기부금을 수령하는 상대방에 따라 손금산입 한도가 상이하다.

우선, 법정기부금은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과, 국방헌금, 국내외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 구호금품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등에 지출하는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또한 지정기부금이 있는바,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과 특정 용도로 지출하는 기부금 및 특별회비·임의조직 단체에 지급하는 회비 등이 있다. 이와는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기부금이 있다.

위에서 열거한 기부금 중에서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법정기부금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 ① 법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기부금을 손금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분의 75(50%)²⁶⁾
- ②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 100분의 5

사학연금기금에서 지급하는 퇴직수당부담금인 236억원은 법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의 규정을 적용한다.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법정기부금의 납입액과 기부금 손비 인정 한도를 비교하여

에 규정된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사립학교 교원연금관리공단이 당해 공단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중 일부를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의 3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수당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이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25)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①항, 제②항

26) 법정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200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 3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75% 범위 내에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기부금 계상금액이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손금불산입의 금액이 달라진다. 이렇듯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당해사업연도소득금액(기부금을 손금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이월결손금]×100분의 75%(2009년부터는 50%)}의 금액과 법정기부금 계상액인 236억원을 비교하여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산출하며, 이렇게 산출된 초과 금액은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²⁷⁾.

여기에서 법정기부금을 제외한 각종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란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하는 모든 기부금, 즉 법정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을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²⁸⁾. 이와 같이 기부금한도초과액 계산과 관련된 세무조정은 「차가감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만 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세무조정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정기부금을 가산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한도초과 여부의 검증이 되지 아니한 기부금의 효과를 제거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이월결손금’이란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되는 결손금으로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공제되는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즉,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이와 같이 세무조정 과정에서 기부금 한도액 계산시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이유는 결손이 누적된 법인에게 있어서 과도한 기부금 지출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27) 다음의 사례를 통하여 기부금 한도초과의 규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소기업인 동일(주)의 2009사업연도(2009.1.1~2009.12.31)의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부금 세무조정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1) 기부금의 내역 : ·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100% 법정기부금) : 80,000,000원

·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지정기부금) : 150,000,000원

(2)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이외의 세무조정 내역 : ①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300,000,000원, ②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20,000,000원, ③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10,000,000원, ④ 기부금 조정전 소득금액 계 : 310,000,000원

(3) 세무상 이월결손금 : 480,000,000원, 먼저, 법정기부금부터 한도액을 계산하면, 기부금 이외의 세무조정 후 소득금액에서 기부금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는 경우 한도액은 60,000,000 (=310,000,000+80,000,000+150,000,000-480,000,000)이다. 따라서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20,000,000(= 80,000,000-60,000,000)이다. 다음으로 지정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하면, 세무조정 후 소득금액에서 기부금 총액을 합한 후 이월결손금 및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을 차감하는 경우 한도액은 0 (310,000,000+80,000,000+150,000,000-480,000,000-60,000,000)×5%)이 된다. 그러므로 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처분된다.

28) 법인세의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차가감소득금액 (+)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중간예납세액 (-) 수시부과세액 (-) 원천납부세액 = 환급세액

(3) 퇴직수당부담금의 기부금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기부금은 기부자에게 손금으로 인정되는 한도에 따라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법정기부금이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전액 손금산입되는 기부금을 말하며, 지정기부금이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공성이 높은 목적을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으로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법인이 지정기부금에 속하는 기부를 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5%의 금액을 한도로 비용 처리된다.

비영리 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단,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그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⁹⁾. 사학연금공단의 경우 사학법인을 대신하여 퇴직수당금액 236억원을 매년 지출하는데 이는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며,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별지 제3호 서식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의해 산출된다.

나. 기부금 한도초과로 인한 법인세 과세 예상 금액

(1) 과거 8개년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현황

최근 사학연금기금은 수익사업 활성화를 통해 연금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과거의 소극적인(passive) 투자전략을 지양하고, 능동적인(active) 투자형태로 전환하여 채권위주에서 부동산투자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이러한 사업다각화는 향후 1~2년 내에 법인세의 실제적인 납부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³⁰⁾.

다음 <표 4>는 과거 8개년도의 사학연금기금의 과세소득금액을 나타낸 것으로, 2004년부터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 양수(+)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매년 기부금 한도초과 236억원이 손금불산입되어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의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학연금기금이 부담하고 있는 퇴직수당부담금인 236억원은 과거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전액 기부금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되고 있다.

29)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30) 자세한 내용은 김수성(2008)의 연구를 참조할 것.

〈표 4〉 과거 8개년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단위 :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당 기 순 이 익	-3,298	201	-648	-153	96	1,466	3,509	5,772
익 금 산 입	3,246	328	984	1,018	1,119	1,155	2,064	1,628
손 금 산 입	522	2,677	1,020	1,309	1,020	2,739	5,351	7,616
차 가 감 소 득 금 액	-574	-2,148	-684	-444	195	-117	223	-214
기부금한도초과액	236	236	236	236	236	236	236	236
각사업연도소득금액	-338	-1,911	-448	-208	432	119	459	21
이월결손금액 잔액	1,373	3,284	2,483	2,988	2,555	2,416	1,977	208

(주) 사학연금관리공단, 2000년~2007년, 세무조정계산서 참조함.

(2) 사학연금기금의 법인세 납부 전망

사학연금기금은 최근 금융상품의 새로운 투자로 인해 최근 4개년 동안에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 발생하였음을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이월결손금의 소급공제로 인하여 5년동안 이월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 음(-)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법정 소급적용 연한인 5년이 경과하게 되고 난후 2007년에는 208억원의 이월결손금이 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사학연금기금은 기금운용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학연금기금의 법인세 납부전망치에 대한 금액을 실제금액으로 추정 하여야 하나, 미래의 세무조정을 예측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에 관한 각종 세무조정 과정을 생략한 채, 「차가감소득금액」을 “0”으로 가정하고, 사학연금기금에서 지급하는 퇴직수당부담금 236억원이 사학연금기금의 과세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236억원의 기부금 한도초과에 관한 부분만을 세무조정을 통해 과세상의 금액을 전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16.28억원에서 28.49억원의 납부세액이 매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³¹⁾.

31) 여기에서 차가감소득금액은 이미 퇴직수당부담금이 반영되어 0인 것으로서 퇴직수당부담금 236억원에 대한 법정기부금의 한도초과 효과만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236억원이고, 다른 세무조정사항은 없으며, 퇴직수당부담금이 236억원을 가정하여 차가감소득금액을 0으로 추정한 것이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472억(한도 50%인 경우) 또는 338억(한도 75%인 경우)를 초과한다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한도 범위 내에 퇴직수당부담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기부금한도초과액이 없게 된다. 그러나 실제적인 예측치를 반영한다면 <표 5>의 예측치는 달라질 수 있다.

〈표 5〉 퇴직수당부담금을 감안한 경우의 법인세 예측치

(단위 :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차 가 감 소 득 금 액	0	0	0	0	0	0
퇴 직 수 당 분 담 지 급 액(A)	236	236	236	236	236	236
기 부 금 손 금 한 도 율(B)	75%	50%	50%	50%	50%	50%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C=A×B)	59	118	118	118	118	118
한 계 세 율(D)	25%	22%	20%	20%	20%	20%
납 부 예 상 법 인 세 액(E=C×D)	14.8	25.9	23.6	23.6	23.6	23.6
주 민 세(F=E×10%)	1.48	2.59	2.36	2.36	2.36	2.36
총 납 부 세 액(G=E+F)	16.28	28.49	25.96	25.96	25.96	25.96

(주) 당기순이익 및 익금산입·손금산입은 추정이 불가능하므로 세무조정에서 제외하고 퇴직수당부담금 금액만을 기준으로 기부금 한도초과를 산정하여 총납부세액을 산정한 것임

IV. 퇴직수당제도와 관련한 회계·세무 개선방안

1. 퇴직수당의 연금회계 준용

사학연금회계는 기본적으로 연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성된다. 연금회계는 가입자 본인과 법인 및 정부의 부담금 징수와 연금 및 퇴직일시금 등의 지급을 처리하는 회계이고, 기금회계는 연금회계에서 적립된 기금을 관리하는 회계이다. 연금회계에서의 잉여금은 기금회계에 전입되고, 부족분은 기금회계로부터 전입 충당한다.

이러한 두 회계의 성격을 분류하여 볼 때, 퇴직수당의 지급과 관련한 내용은 연금회계의 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퇴직수당을 공단의 기금회계에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연금회계로의 회계규정을 수정하여 퇴직수당부담금이 기부금의 비용계상에서 고유목적에 위한 급여지급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연금회계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사립학교법인을 대신하여 사학 연금기금에서 부담하는 퇴직수당부담금에 대하여는 기부금의 한도초과액을 적용하지 않고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연금회계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기부금 한도초과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법인세제의 재검토

가. 기부금 한도초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례규정 신설

사학연금기금의 세무조정은 기금회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기금회계상의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세법상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그러나 연금회계 성격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제도에 필요한 재원을 기금회계 대상인 연금기금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세무조정시 퇴직수당부담금에 대하여 기부금 한도초과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세무조정시에 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을 두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행과 같이 퇴직수당부담금은 연금제도상에서 소득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회계 대상에 속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기금에서 지급함으로 인하여 기금회계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무상의 이월결손금이 존재함으로 인해 매년 기부금 한도 초과로 인해 손금불산입되어 왔다.

현행 퇴직수당부담금은 사학연금기금이 부담하는 236억원은 국가에 기부한 것으로 보아 법정 기부금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과다로 인하여 기부금에 대한 손금인정을 받지 못하고 매년 236억원이 고스란히 기부금 한도초과를 적용받아 손금불산입되고 있다. 이는 사학연금기금의 법인세 납부가능성을 앞당기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기금관리기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중 당해 법률에서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수당부담금은 기부금의 한도액의 대상으로 보기 보다는 기부금한도초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전액 손비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 고유목적사업비(가칭)의 내부회계규정 수정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현행 사학연금제도에서 지급되는 퇴직수당의 급여는 연금회계에 해당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기금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기금회계에 해당되어 이를 비용으로 처리 하였고, 법인세 신고시 기부금 한도초과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수당 급여의 성격과 제도의 취지 및 태동배경을 살펴볼 때, 이러한 제도는 연금회계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회계의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내용이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기금회계상의 내부회계처리 규정을 수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퇴직수당제도가 불가피하게 태동되었고 이에 대한 재원부담의 일부를 사학연금기금이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액 비용으로 계상될 수 있도록 새로운 계정과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현행과 같이 기부금으로 처리되고 있는 기금회계 규정을 수정하여 연금기금 회계에서는 연금제도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급되는 특성을 살려 ‘고유목적사업비(가칭)’라고 하는 계정과목을 신설하여 기금회계에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내부회계 규정의 수정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3. 비용부담 방법 개선 및 퇴직수당 연금화 실시

가. 퇴직수당부담금 비용부담 방법 개선

퇴직수당제도는 연금기금의 조기 소진을 야기하는 또 다른 요인 중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민간기업에서는 매년 근로자 월평균임금의 8.3%를 퇴직금으로 지출하기 위해 퇴직금 재원을 고용주가 부담하고 있는 반면, 사학연금법에서는 사학교직원의 퇴직금에 해당되는 재원을 고용주인 사학법인이 마땅히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퇴직수당의 재원을 상당기간 연금기금에서 지급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퇴직수당을 민간기업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으로 간주하고 현행 사학연금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비용부담자를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퇴직수당의 재원부담자를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토록 하여 연금관리공단이 이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고, 학교경영기관에서 소속학교 교직원에 대하여 현행 퇴직수당금액을 부담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현행 사학연금법에서 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각 학교기관별로 자체 규정에서 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그 내용을 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경영기관이 이와 같은 재원을 부담하게 되면 사학연금기금에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우선, 현재 사용자의 재원이 아닌 국가의 재정과 연금기금으로 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방안으로 개선이 될 경우 퇴직수당부담금을 지급하지 않게 됨으로써 국가의 재정절약과 사학연금기금의 재정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국가에서 전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립학교의 교육은 국공립학교의 교육과 같고, 교육사업은 국가사업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행 사학연금제도와 공무원연금제도는 그 내용상 거의 유사하고, 현행 국공립학교교원의 임무와 역할이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하등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와 같이 국가에서 모든 퇴직수당의 재원을 부담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면은 사학교직원의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퇴직수당을 국가에서 부담한다는 것이다.

셋째, 비용부담 당사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퇴직수당을 보험금 성격으로 보아, 연금제도상 비용부담 당사자가 공동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고 사학교직원이 퇴직할 때 이를 수령하는 원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퇴직수당 부담비율을 퇴직수당의 전체비용을 기준으로 연금부담금의 비율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부담비율을 정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교직원은 이에 관한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이 방식으로 개선할 경우 사학교직원은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국공립교직원의 공무원 연금가입자에게는 퇴직수당의 비용부담을 별도로 하지 않는 반면, 사립학교교직원의 경우에는 일부 비용부담이 있어 이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추가로 부담률을

높이는 결과가 되어 전체적으로 현행 연금비용 부담률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다. 긍정적인 면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부담함으로써 사회보험의 원리와 현행 비용부담의 원리에 타당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퇴직수당 급여의 연금전환

현행 일시금(lump sum payments)으로 수령하는 퇴직수당의 수령방식을 연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즉, 퇴직수당에 해당되는 부분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현행의 일시금 제도를 폐지하고 연금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국가에서 부담하는 퇴직수당의 규모를 기준으로 국가만이 부담하는 연금급여로 전환하는 방안과 국가는 현행수준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여기에 교직원과 학교기관에서 추가로 부담하여 이를 합한 수준의 연금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이 두 방안중 후자의 방안이 더욱 긍정적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현행 퇴직수당의 범위에서 연금으로 전환하는 전자의 방법은 금액 자체가 미미하여 노후생활보장에 효과가 적어 반대가 예상되나, 현행과 같이 국가부담분을 제외하고 당사자들이 추가 부담하여 연금지급 수준 자체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후자의 방법은 생활안정을 위한 연금급여로의 전환이므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³²⁾

V. 결 론

현행 사학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과 동일하게 퇴직수당이라는 지급규정이 있다. 이는 일반기업의 퇴직금과 비슷한 성격의 급여에 해당된다. 공무원에 대한 퇴직수당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는 사용자부담의 급여로서 그 성격은 후불임금 성격 이외에 사회보장 성격과 공로보상적 성격이 가미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³³⁾. 그러나 사학교직원에 대한 퇴직수당은 매년 국가와 사학연금기금에서 지급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국가가 공무원의 사용자로 되므로 퇴직수당을 전액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으나, 사학연금제도는 퇴직수당의 재원을 사학연금기금은 매년 236억원을 학교법인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국가가 지급하고 있다. 사학연금기금의 경우 국가를 대신하여 퇴직수당금액 236억원을 매년 지출하는데 이는 법정기부금에 해당된다. 그러나 236억원이 기부금으로 수익사업회계에서 비용으로 계상되나, 기부금 한도초과로 인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퇴직수당제도는 민간근로자와의 사회적 형평성을 이유로 1991년에 도입 되었으나, 그 비용부

32) 한국사회보험연구소, 2008. 사학연금의 종합적 발전방안 연구, 사학연금관리공단 용역보고서중 '퇴직수당(퇴직금)연금제도의 연금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윤·신종욱의 연구자료를 기초로 작성함

33) 대법원 1995.10.12 선고 94다36186 판결.

담에 있어서는 기존 법체계에 맞게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가 공동으로 법정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경영기관들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할 수 없어서 사학연금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지금까지 연금재정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학연금법의 제도 내에 존재하는 퇴직수당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사학연금기금의 법인세 과세에 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통하여 사학연금기금의 재정안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는 각 학교에서 지급하여야 할 퇴직수당부담금의 236억원에 대한 법인세제상의 불이익이 고스란히 사학연금기금이 떠 앓고 있는 실정이다. 퇴직수당은 기부금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이러한 퇴직수당은 연금제도의 급여의 일종으로서 본질적으로 살펴볼 때 연금회계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기금회계에서의 법인세 세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퇴직수당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자 하였다. 우선, 퇴직수당의 연금회계의 준용을 들고자 한다. 연금회계와 기금회계의 두 회계의 성격을 살펴보면 연금회계의 회계규정을 수정하여 퇴직수당부담금은 연금회계 항목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현행과 같이 사학연금기금에서 학교법인을 대신하여 부담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기부금의 한도초과액을 적용하지 않고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기부금 한도초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 퇴직수당 제도 자체가 본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연금회계 성격에 해당되는 퇴직수당부담금이 사학연금기금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부금 한도초과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조세특례 조치의 일환으로 기부금 한도초과의 대상이 아니라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는 연금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사항으로, 퇴직수당부담금의 학교법인 내지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퇴직수당의 일시금 성격의 수령을 폐지하고 퇴직수당제도를 연금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문제는 사학연금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가 시급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 강강원. 2005. “퇴직수당의 법률적 성격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제19권 제1호 : 65 - 109.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김수성. 2008. “공적연금기금 운용이익의 과세여부에 관한 법제적 연구 : 사학연금기금 운용이익 과세를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제25권 제2호 : 93 - 138.
- 김용하. 2002. “공적연금의 재정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사회과학연구 제8권 제2호 : 397 - 443.
- 김중양·최재식. 2004. 「공무원연금제도」. 법우사.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2000~2007 사학연금통계연보.
- _____. 2007. 「연금실무 길라잡이」. 사학연금관리공단실무 해설서.
- _____. 2006.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조문별 해설」. 사학연금실무서.
- _____. 1991. 「한국의 교육발전과 사학」.
- 신흥식·노인철. 2000. “국민연금 기금 운용 회계기준의 실제 비교”.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연구센터 연구보고서 2000-06.
- 전춘옥·이효익·이석영. 2001. “연구보고서 제7호 연금회계”. 한국회계연구원.
- 최재식. 2004. 「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 분석」.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한국개발연구원. 2002. 「공무원 연금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한국보험학회. 1999. 「사학연금 책임준비금 산정 및 재정안정화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
- _____. 2001. 「사학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 방안 연구」. 사학연금관리공단 용역보고서.
- 한국사회보험연구소. 2008. 「사학연금의 종합적 발전방안 연구」. 사학연금관리공단 용역보고서.
-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사학연금재정안정화 방안연구」. 사학연금관리공단 용역보고서.

A Study on Tax and Accounting Alternative for Contribution Maximum Limit Excess of Retirement Allowance Contribution

Su-Sung, Kim*

〈Abstract〉

Korea Teachers' Pension Fund (hereafter referred to as "KTPF") has retirement benefit, survivors' benefit, and disability benefit, and in addition to 3 kinds of benefits, there is retirement allowance which is similar to superannuation of private enterprise. The retirement allowance is paid to the retired or dead person whose service length is more than 1 year. As a rule, the retirement allowance is to be paid by employer. Therefore, in case of Government Employee Pension, the retirement allowance is paid by government. However, in case of KTPF, the financial sources for the retirement allowances are provided by the government and KTPF. That is, KTPF pays 23.6 billions won every year and the remaining amount is paid by government. The allotment amount of 23.6 billions is called contribution for retirement allowance and that is treated as legal contribution in corporate taxation.

However, the range of expenditure is largely reduced to 50% so that 50% of yearly paid 23.6 billions is included to taxable income. Moreover, in case of the deficit at the beginning of a period, all the amount of the contribution are not accepted as expenditure.

Although KTPF pays 23.6 billions in behalf of school foundation every year, they have no advantages of taxation. Thu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ax and accounting system.

This study is to indicate such problem and to derive an alternative for improvement in tax and accounting of KTPF. First, through the modification of internal accounting system, it is preferable that expenditure treatment for the retirement allowance is conformed with pension accounting. The retirement allowance system is referred to pension benefit and is to be for Essential Business which is subjected to non-taxation. Nevertheless, the amount of the retirement allowance is paid by KTPF, which is subject to taxation. Thus it is necessary to modify the accounting system. As a result, the amount of the retirement allowance paid by KTPF is to be excluded from taxation hereafter.

* Korea Teachers Pension Fund.

Second, considering to the situation that the retirement allowance is paid by KTPF in spite of the contribution which is to be paid by school foundation, it is preferable to newly establish an exemption law in which the retirement allowance is excluded from maximum limit excess of contribution. Such a problem is to be urgently settled since the problem is imminent in the KTPF.

In conclusion, this study is to recognize such a taxation problem and to prevent deterioration of pension fund finance due to the unreasonable taxation on the retirement allowance contribution. Further, this study is to find an alternative for stability of pension fund finance through the modification on the taxation law.

<Key words> Public Pension, Retirement Allowance, Retirement Allowance Contribution, Legal contribution, Contribution Maximum Limit Excess, Korea Teachers' Pension Fund